

방치선박 제거 공고

서귀포항 내 소유자 미상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, 해당 선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(☎ 064-720-2762)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3일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

1. 공고기간 : 2026. 9. 3. ~ 9. 18.
2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, 방치된 현장 게재
3. 제거대상 : 붙임 참고
4. 소유자·점유자 및 이해관계인* 유의사항

* 「선박등기법」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에 따라 선박원부(船舶原簿)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

- 가. 공고 기간 내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폐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공유수면 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는 상기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공 고 제2026 - 155호

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

발견장소	서귀포 남방 20해리 해상(33-54.43N, 126-35.33E) / 현재 서귀포항 7부두 보관 중			
선 박 제 원	선명(명칭)	미상	선박(어선)번호	미상
	선 적 항	미상	톤 수	미상
	주요치수	중양부분 폭 : 5.2m, 길이 : 1.5m		
관 리 청	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		관 리 번 호	제 2025 - 1호
제거 예정일자	2026년 9월 중			
제 거 방 법	직권제거(폐기물 처리)			
공매장소 및 일시	해당 없음			
입 찰 보 증 금	해당 없음			

방치선박
전경사진



위 선박(어선)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이용 및 효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9월 18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 년 9 월 3 일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(인)



(담당자 : 조혜윤 주무관 전화번호 : 064-720-2762)